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53,000,000	40,590,000
일반회계	1,231,000,000	36,930,000
특별회계	122,000,000	3,660,000
공기업특별회계	54,000,000	1,620,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100,000	1,053,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900,000	567,000
기타특별회계	68,000,000	2,04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416,000	192,4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551,000	106,5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36,000	28,080
주택사업특별회계	404,000	12,120
치수사업특별회계	23,423,000	702,690
주차장특별회계	5,790,000	173,700
대지보상특별회계	288,000	8,64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130,000	603,9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593,000	197,79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5,000	12,4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000	1,6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사항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사항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해당사항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642,075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10,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642,075천원)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9,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